

방송국 운영규정

제 1 장 총칙

제1조 (명칭) 본 방송국은 서울신학대학교 교육 방송국이라 한다.

제2조 (위치) 본 국은 본 대학교(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89번길 52)내에 둔다.<개정 2015.3.1>

제3조 (목적) (1) 서울신학대학교의 부설기관으로서 본 대학교 교육이념과 복음에 입각한 교육 목적에 이바지 하며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대학 문화 활성화에 병행하여 찬양과 교양 및 사회, 문화 정보 프로그램으로 학업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데 있다.

(2) 성주골 캠퍼스에 실천하는 젊은 지성의 신앙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.

(3) 본 국은 학생 과외활동의 하나로써 학생 방송요원을 참가시켜 방송업무 전 과정을 습득시킨다.

제4조 (사업)

- (1) 정규방송
- (2) CCM콘서트
- (3) 방송제
- (4) Home Coming Day

제 2 장 조직

국장(총장), 운영위원회, 방송주간(담당교수), 실무국장, 제작국, 아나운서국, 보도국, 기술국
<개정2015.3.1>



제5조 (임원 및 임무) 임원1, 임무2

(1) 국장

- ① 총장이 당연직이 된다.
- ② 국무를 통괄한다.

(2) 방송주간

- ① 전임교원 이상의 자로 국장이 위촉 임명한다.
- ② 방송업무와 국원 활동에 대한 제반 행정 지도와 국장을 보좌한다.

(3) 운영위원회

- ① 국장이 위촉 임명한 처장 및 교수 5~7명(방송 주간-당연직)
- ② 방송국 사업 계획 검토 및 예산, 결산 심의 및 기타 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위임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.
-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방송주간으로 한다.

제6조 본 방송국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 3 장 국 원

제7조 본 국의 국원은 수습 국원, 정국원으로 한다.

제8조 (자격 및 업무) 자격 1, 업무 2

(1) 수습국원

- ① 본 방송국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방송주간이 임명한다.
- ② 정국원이 되기 위해 1년 이상의 방송업무에 관한 견습을 한다.

(2) 정국원

- ① 견습을 마친 자로 국장이 임명한다.
- ② 본 방송국의 규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방송국 외부의 활동은 운영위원회와 국장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허락받아 활동한다.

제9조 (국원선발)

(1) 수습국원

본 대학교의 재학생으로서 매 학년도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.

(2) 정국원

견습기간을 마친 자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선발한다.

제10조 국원중 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을 때는 국원자격을 상실하며, 정국원이었던 자로서 재입국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장의 재임명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 국원중 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2.00미만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장의 재가를 받아 국원자격을 상실한다.

제12조 국원의 벌칙은 본 방송국 업무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했을 때 본 방송국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, 기타 학칙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장이 국원의 자격을 취소한다.

제 4 장 부서 및 업무

제13조 본 방송국의 각 부서는 다음과 같다.<개정2015.3.1>

제작국, 아나운서국, 보도국, 기술국

제14조 실무국장은 3학년 1학기 이상의 학생으로 하고, 운영위원회와 국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15조 보도국은 취재활동과 방송을 진행한다.<개정2015.3.1>

제16조 제작국은 모든 프로를 편성하여 편성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.<개정2015.3.1>

제17조 기술국은 시설 및 수리조정을 담당한다.<개정2015.3.1>

제18조 아나운서국은 제작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방송한다.<개정2015.3.1>

제 5 장 국원임명 및 배정

제19조 실무국장은 국의원 직선에서 선출하고 국장이 임명한다.

제20조 각 국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주간이 배정한다.<개정2015.3.1>

제 6 장 재 정

제21조 본 방송국 재정은 교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22조 매 학년도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며 예산결산 현황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7 장 부 칙

제23조 본 규정을 수정하거나 재정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국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.

제24조 ①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규례에 의한다.

② 본 규정은 1993년 3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